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656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전수려
주위적 피고 A
예비적 피고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휘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 사이에 2020. 6. 10. C에 관하여 체결된 자동차관리정비사업 양도, 양수계약을 84,222,114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는 원고에게 84,222,11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222,11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발생

1) 원고는 2013. 3. 11. 시흥시 D 자동차정비업체인 'E공업사'(이하 'E공업사'라 한다) 대표자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의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기업운전 일반자금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을 8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3. 10.까지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보증번호: G)를 발행하였고,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최종적으로 보증원금 72,250,000원, 보증기한 2021. 3. 5.까지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 피고 B는 2013. 3. 20.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1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3) 피고 B는 2020. 7. 23.경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0. 9. 18.경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받았다.

4) 원고는 2020. 11. 16. 이 사건 은행에 피고 B를 대위하여 대출 원리금 73,394,115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이율은 연 8%이다.

5)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21차전462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73,409,242원과 그 중 73,394,115원에 대하여

2020. 11. 16.부터 2021. 1. 31.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21. 1. 15.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2021. 1. 31. 피고 B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설립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A는 2020. 6. 10. 시흥시 H아파트, I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C'를 개업하고, 그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업태 : 운수업, 종목 : 렉카)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 1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B는 2020년 6월경부터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대출금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원고의 사전 구상권 행사가 임박한 상태에서, E공업사에 관한 영업 일체를 아들 피고 A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영업을 양수한 피고 A가 2020. 6. 10. C를 개업하기에 이르렀다. 피고들 사이에 2020. 6. 10. 체결된 위 영업양도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23. 2. 28. 현재 구상금 채권 원리금인 84,222,114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84,222,114원과 그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E공업사의 영업자산 등을 빼돌려 2020. 6. 10. 피고 A 명의 C를 설립, 운영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을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3. 2. 28. 현재 구상금 채권 원리금액인 84,222,11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피고 B가 E공업사에 관한 영업 일체를 피고 A에게 양도함으로써 2020. 6. 10. C 개업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자동차정비업체인 E공업사와 렉카 운수업체인 C의 업종, 업태가 서로 다르고, 사업장 소재지 역시 다른 점, E공업사는 현재 다른 사람이 'J'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1호증,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23가단63959호로 피고 B가 E공업사 영업 일체를 K에게 양도하였음을 원인으로 K를 상대로 손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또는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3. 11. 8. K의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사이에 2020. 6. 10. E공업사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E공업사의 영업자산 등이 실질적으로 C로 그대로 이전됨으로써 피고들이 E공업사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손해행위 취소, 가액배상 주위적 주장,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 불법행위 예비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형우